

학습자료(성희롱, 개인정보보호교육)

■ 1차시 성희롱 예방교육

*직장 내 성희롱

-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,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(원하지 않는)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
*직장 내 성희롱 특징

- 피해자는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, 피해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도 우려가 되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.
- 성희롱은 행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어렵다.
- 20-30대의 젊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.
- 기업 차원에서의 대안이 부족하다.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, 행위자의 부서 전환 배치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. 많은 기업의 조직문화가 성희롱에 관대한데,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다.

*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구별

- <남녀고용평등과 일/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>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는 사업주, 상급자, 다른 근로자,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로 본다.
-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,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주, 근로자로 보며 고객은 제외한다.
- <남녀고용평등과 일/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>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근로자이다.
-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제한이 없다.

■ 2차시 개인정보보호교육-개인정보보호

*개인정보 보호 원칙
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,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

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*개인정보의 수집단계**

-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-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

-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/이용 목적,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의 사항을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
-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
***개인정보보호 수칙**

-적절한 방법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,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관행이 아닌 법률근거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.

-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, 개인정보 처리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하나로 볼 수 있다.

-웹 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 취급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 등은 정당한 요구이다.

-개인정보 취급현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, 보유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.

***개인정보의 처리 제한**

-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/신념, 노동조합/정당의 가입/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-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-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,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*개인정보자기결정권**

-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,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***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칙**

-민간정보수집금지의 원칙

-최소수집의 원칙